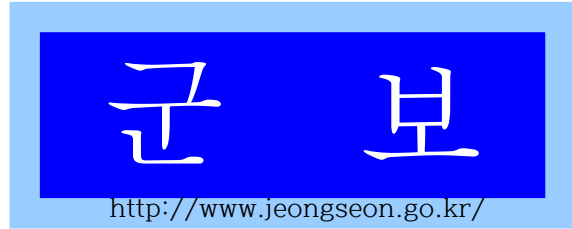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83호 2019. 6. 19.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126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9
- 정선군 고시 제2019-12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1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69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1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126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6월 14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집행이 어려운 미확폭 구간을 기 개설된 도로 현황으로 반영하여 폭원을 축소함으로써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방지 및 군계획시설인 도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건명 :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다.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3번지 일원

라. 면적 : 56,410m²(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바.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사.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68-3철 일원	56,410	-	56,410	강고 제77호 (2002.4.8)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6,410	-	56,410	100.0	
일반상업지역	56,410	-	56,410	100.0	

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6	1,414	1	389	2	479	3	546
중로	4	976	-	-	1	430	3	546
소로	2	438	1	389	1	49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9	15	보조간선도로	462 (430)	중로 3-1 사북리 산153-12입	중로 1-1 사북리 381-32도	일반도로	사북역	강고74호 (91.6.18)	
기정	중로	3	2	12	보조간선도로	903 (394)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130	중로 3-2 사북리 377-7철	소로 1-3 사북리 452-77도	일반도로	경희한의원	-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79 (22)	중로 3-2 사북리 366-6도	2호 광장 사북리 367-17도	일반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389	중로 3-2 사북리 452-75천	중로 3-4 사북리 366-6도	일반도로	사북시장	강고26호 (79.2.8)	
변경	소로	1	3	8~12	국지도로	389	중로 3-2 사북리 452-75천	중로 3-4 사북리 366-6도	일반도로	사북시장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49	중로 3-1 사북리 산153-11입	중로 3-2 사북리 369-17대	일반도로	사북역전	강고26호 (79.2.8)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3	소로1-3	○ 폭원 축소 - B=10m → 8 ~ 12m	○ 기 개설된 도로의 현황을 반영하여 집행이 어려운 미확폭 구간에 대한 폭원을 축소함으로써 미집행시설의 실효방지 및 군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관리 도모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사북 역전 1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66-72도 일원	1,235	-	1,235	강고 제300호 (2003.12.13)	

④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 계획 : 변경없음

가. 단위대지 규모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주 거 지 역	○ 최소개발규모 : 60㎡, 최대개발규모 : 1,000㎡	
상 업 지 역	○ 최소개발규모 : 150㎡, 최대개발규모 : 2,000㎡	
공 동 건 축	○ 공동건축(규제 또는 권장)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	

나. 공동건축

공동건축 규제	공동건축 권장	비고
○ 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 일부 맹지형 필지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 여러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	

2.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 적 (㎡)	획 지		증·감(㎡)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		
기정	B1	1,650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1,650	-	-
변경	B2	2,908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2,910	증)2	소로1-3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면적 증가
변경	B3	8,168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8,361	증)193	소로1-3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면적 증가
기정	B4	9,542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9,542	-	-
기정	B5	1,240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1,240	-	-
기정	B6	9,013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9,013	-	-
기정	B7	5,700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5,700	-	-

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불허용도

구분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1 일반 상업 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건축자재 관련업종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 등)
2 고한 1구역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상 동
3 일반 주거 지역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상 동

나. 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비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	○ 전층 권장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전층 권장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1층 권장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 도·소매시장 - 상점	○ 전층 권장용도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전층 권장용도

다. 건폐율

구분	건폐율	비고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라. 용적률

1) 용적률 계획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중심지 형성지역	400 ~ 500	500 ~ 600	사북시장 및 사북역세권 주변
기타 상업지역	300 ~ 400	350 ~ 500	
주거지역	150 ~ 200	200 ~ 250	(구) 사북초등학교 주변

2) 용적률 완화적용(Incentive)에 관한 계획

구분			완화기준	비고
허용용적률	공동 건축	규제사항	○ 30%	
		권장사항	○ 40%	
	경사지붕의 처리		○ 20%	
	경사지붕색채		○ 10%	
	건축한계선		○ (조성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전층권장용도		○ (권장용도 누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1층권장용도		○ (지상접지층 권장용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공개공지		○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전면공지		○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공동주차장 조성		○ 기준용적률×0.1	
상한용적률			○ 시행지침 제11조 4항 참조	

주 : '경사지붕의 처리' 와 관련한 완화기준은 시행지침 제32조에 의한 경사지붕처리 조항의 ①항 권장사항을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마. 높이

구분	최고높이	비고
중심지 형성지역	8 ~ 12층 이하	사북시장 및 사북역세권 주변
기타 상업지역	8 ~ 15층 이하	
주거지역	4층 이하	(구) 사북초등학교 주변

바. 배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며,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	지구단위 계획지침도 참고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
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B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B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B3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500%, 허용 : 550%~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B4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B5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용 도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기정	B6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500%, 허용 : 500%~600%	
기정	B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높 이	◦ 8층(28m)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기정	B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⑥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내용 : 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 위치 및 조성 면적,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	○ 대형필지

나. 경관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벽처리	○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옥외광고물	○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 지주형 간편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표시금지 ○ 판류형 간편은 원색사용 지양	
색채	○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1층부 형태	○ 개구부 통일성 유지 ○ 투시형 셔터 권장	
조명	○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경사형 지붕	○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권장) - 주거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30% 이상 - 상업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40% 이상 - 공공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50% 이상	
투수성 포장	○ 투수성 포장재 : 흙, 잔디, 자갈, 기타 투수성 포장재 ○ 전체 포장면적의 70%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	

다.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공동주차 출입구	○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	
보차혼용통로	○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B1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B2	사북리 368-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B3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기정	B4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B5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B6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기정	B7	사북리 373-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정선군 고시 제2019-12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군 고시 제2019-49호(2019.3.14.)로 고시된 【군도7호선(사북~직전)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9조에 의거 의제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과 및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6월 14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군도7호선(사북~직전)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의제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나.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직전리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지형도면 : 실음생략(정선군청 건설과, 도시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 고한·사북 도시지역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53	8.5	보조 간선 도로	279	소로3-4 사북리 348전	도시지역 경계 사북리 334전	일반 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2-53	◦도로신설 - B=8.5m, L=279m	◦ 군도 7호선(사북~직전) 개설을 위한 군계획시설(도로) 신설

■ 비도시지역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군 7C	8.5	보조 간선 도로	1,154	고한·사북 도시지역 경계 사북리 334전	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직전리 521대	일반 도로	-		군도 7호선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2-군7C	◦도로신설 - B=8.5m, L=1,154m	◦ 군도 7호선(사북~직전) 개설을 위한 군계획시설(도로) 신설

2.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69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9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 : (도 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증산) 일원
(주차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6-12
3.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및 주차장)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4.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정선읍사무소, 고한읍사무소, 사북읍사무소, 신동읍사무소, 남면사무소
5.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19. 6. 19. ~ 2019. 7. 05.)
6.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략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19. . .
공 략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략 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			